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나63889 판결 [선급금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래형

피고, 피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장유식

변 론 종 결 2021. 10. 8.

판 결 선 고 2021. 12. 1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단5110622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91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21. 12.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8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자치단체 간의 원도급공사계약

(1) 원고는 2017. 3. 2. 발주처인 C자치단체(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사이에 장기계약공사인 「D사업」(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1,106,784,000원, 총 공사 준공예정일 2019. 1. 26.로 정하여 총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발주처와 사이에 원도급공사 중 1차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61,700,300원, 준공예정일을 2018. 7. 17.로 정하여 1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8. 2. 23. 발주처와 사이에 원도급공사 중 2차분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21,800,000원, 준공예정일을 2019. 6. 30.로 정하여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 간의 하도급공사계약

원고는 2017. 4.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하수관로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691,130,000원(공급가액 628,300,000원, 노무비 138,800,000원, 부가가치세 62,830,000원), 준공예정일 2019. 1. 26.로 정하여 E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작성

발주처와 원고, E은 2017. 5.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에 근거하여, 발주처와 수급인,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위 합의서 6조에는 '선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차 선급금과 피고의 보증

- (1) 원고는 2017. 3. 20. 발주처로부터 1차분 원도급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214,500,000원¹⁾ 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E에 선급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 (2) E은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장차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 반환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금액 136,400,000원, 보증기간 2017. 8. 2.부터 2019. 1. 26.까지로 한 선급금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3) E은 2017. 8.경 원고에게 136,400,000원의 선급금을 신청하면서 위 선급금 보증서와 함께 선급금 사용계획서(을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용계획서에는 선급금 중 27,280,000원을 노무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8. 17. E이 신청한 선급금 전액인 136,4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1차 선급금'이라 한다).

마. 2차 선급금과 피고의 추가 보증

- (1) 원고는 2018. 3. 14. 발주처로부터 2차분 원도급공사에 대한 선급금으로 153,000,000원²⁾ 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E에 선급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였다.
- (2) E은 2018. 3. 29. 장차 원고로부터 추가로 받게 될 90,860,000원의 선급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추가 선급금보증서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았다(보증채권자 원고, 보증기간 2018. 3. 29.부터 2019. 1. 26.까지. 이하 1, 2차 선급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보증책임)

① 피고는 계약자가 앞면 기재 계약(주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채무자에게 아래 각호의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 또는 기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보증채권자의 미정산 선급금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아래 각호의 반환사유가 중복될 경우 먼저 발생한 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주채무자의 공사포기

3. 계약해제 또는 해지

제2조(선급금 정산)

① 선급금 정산은 주계약상의 정산방법을 따르되, 주계약(또는 하도급의 경우 상위공사)이 연차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공사계약 포함)인 경우 선급금 정산은 선급금 지급대상 계약금액(선급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4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피고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통지를 받은 경우 피고는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사고와 관련된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증금의 지급)

① 피고는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3) E은 2018. 3.경 원고에게 90,860,000원의 선급금을 신청하면서 위 추가 선급금보증서와 함께 선급금 사용계획서(을 제1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용계획서에도 선급금 중 20,000,000원을

노무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8. 4. 6. E이 신청한 선급금 전액인 90,86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2차 선급금'이라 한다).

바. E의 공사 포기 및 원고의 보증금 청구

(1) E은 2018. 4.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고지하고, 2018. 5. 29. 원고에게 타절정산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원고가 직접 시공을 하여 2018. 7. 25. 1차분 원도급공사가 준공되었다.

(2) 원고는 2018. 10. 19. E에, E의 공사 포기 및 타절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E로부터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8. 10. 22. 피고에게 합계 104,920,000원의 선급금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6.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한 타절정산합의를 하였다. 그 내용은 E의 기성공사금액을 186,560,000원으로 합의하고, E은 102,803,600원의 미정산 선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며, 원고가 위 금액을 피고에게 청구하더라도 E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4) 한편 E은 원고에게 2018. 8. 9.경 3,200만 원, 2018. 8. 30.경 2,000만 원, 2018. 9. 5.경 2,0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24, 33, 3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2행의 '2,780만 원'을 '2,728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E의 공사 포기를 이유로 한 원고의 통보로 해지되었고, 이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정산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노무비 상당 금액이 보증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E의 각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선급금의 일부를 노무비에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이 2017. 8., 2018. 3. 원고에게 제출한 선급금신청사유서에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를 적기에 구입확보하는 한편 자재 및 장비대를 제때에 지불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급금을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각서에는 ‘선급금을 계약 목적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장비대 미체불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선급금 전액을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의하면 원고가 E에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 목적은 자재 대금 및 장비대 지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에 의해 E의 노무비는 절차를 거쳐 발주사로부터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직접 지급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E에 노무비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E이 노무비를 선급금으로 미리 지급받아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선급금 중 47,280,000원(1차 선급금 중 27,280,000원 + 2차 선급금 중 20,000,000원)이 노무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선급금 중 노무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와 사이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한다’고 기재된 것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실시와 관련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보증하는 선급금의 범위를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액과 달리 ‘선급금에 노무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선급금에서 노무비를 뺀 금액’으로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1차분 원도급공사의 준공으로 1차 선급금의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E이 2018. 4. 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고지하고 2018. 5. 29. 타절정산을 요청한 사실, 이후 원고가 직접 시공을 하여 2018. 7. 25. 1차분 원도급공사가 준공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 차수 계약이고 원고가 E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단일한 하나의 하도급계약일 뿐, 장기계속계약 내지 총괄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와 E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점, ② 1, 2차 선급금보증서에는 ‘선급금 산정의 기준 (계약)금액’과 ‘계약금액’이 모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전체 계약금액인 691,1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차 선급금보증서에는 ‘1차 선급금보증서 보증분에 대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추가 보증’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점, ③ 따라서 원고가 E에 두 차례 지급한 선급금은 원고와 발주처 사이의 각 원도급공사의 기성고와 관련하여 별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④ 선급금의 정산 완료 여부는 전체 공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1차분 원도급공사가 준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하도급계약의 선급금 일부에 대하여 정산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선급금이 모두 정산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 주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조합원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계약보증계약에서 조합원이 조합에게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불실고지하거나 불고지하는 것은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조합이 착오에 빠진 경우 조합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6555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합원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조합이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볼 만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2, 14, 15, 24,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발주처는 ‘차수별 원도급 계약금액 - (직접노무비 × 1.1) × 70%’의 계산식으로 선급금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계산식에 의하지 않고 발주처와의 1차 공사도급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선급금 지급률인 46.46%에 따라 ‘선급금 대상금액 × 46.46%’의 계산식으로 선급금액을 정하여 E에게 지급한 사실, E의 기성금액 총 186,560,000원 중 노무비가 총 127,089,600원인 사실, E은 원가계산서상 노무비 100,567,910원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127,089,600원의 노무비를 지출한 사실, 원고는 선급금 정산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정산식에 의하지 않고 각 기성금액의 46.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정산하는 것으로 기성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3) 계산상 문제로 2회 기성금액에 대한 선급금 정산금을 2,116,400원으로 수정4)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 갑 제5,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원고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E 등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한 것인바, 원고가 E에 선급금을 지급할 때 발주처가 지급한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한 선급금을 다소 초과하는 금액을 E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E이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선급금의 액수를 그대로 고지한 이상 피고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정산식[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명시된 정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E과 다른 방식으로 선급금을 정산하여 피고의 보증금 산정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하나, 피고는 보증금액 심사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올바른 정산식을 적용하여 정당한 선급금 정산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공사대금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정산식에 의할 경우 노무비의 비율이 높다고 하여 선급금 정산에 있어 피고가 특별히 불리하게 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보증계약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

보증채권자가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다면 보증채권자가 취득한 위 환급세액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보증채권자가 위 환급세액 상당을 반환하게 되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참조).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선급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았으나 그후 2018. 8. 9. E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선급금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에 대한 환급세액 상당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보증책임의 범위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한 사실, E의 기성공사대금은 전체적으로 186,56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을 정산하면, 선급금 정산금은 61,345,370원(= 선급금액 227,260,000원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186,560,000원 ÷ 계약금액 691,130,000원. 원 미만 버림)이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로부터 반환받은 72,000,000원을 공제하면, E의 미정산 선급금은 93,914,630원(= 227,260,000원 - 61,345,370원 - 72,000,000원)이 남게 된다.

마.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선급금 보증금 청구를 한 다음날인 2018. 10.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8. 10. 22. 피고에게 선급금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25. 원고에게 보증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2018. 12. 6. 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대한 타절정산 합의를 한 뒤 2018. 12. 6. 피고에게 위 타절정산 합의서 등을 포함한 추가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9. 1. 25. 추가자료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9. 2. 경에도 피고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2. 원고에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미정산 선급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4조에 따라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 미정산 선급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피고가 보증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증금액은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가 보증금의 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지급해야 할 보증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는데도 원고의 보증금 청구에 따라 곧바로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다른 한편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증책임 발생 여부가 확실한 경우에도 단지 원고가 구체적인 책임 범위를 산정할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계속하여 지체책임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E과의 타절정산 합의 후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 다시 추가자료를 제출한 2019. 1. 25.로부터 5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31. 비로소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바.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93,914,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신재환, 판사 김정민, 판사 윤웅기

1) [1차분 원도급 계약금액 461,700,300원 - (직접노무비 141,097,212원 X 1.1)] X 70% =
214,500,000(만 원 이하 버림)

2) [2차분 원도급 계약금액 321,800,000원 - (직접노무비 93,419,728원 X 1.1)] X 70% =
153,000,000원(십만 원 이하 버림)

3) 원고가 당초 산정한 선급금 정산금 총 86,670,000원 = 1회 기성에 대한 정산금
50,340,000원(≒ 1회 기성대금 108,350,000원 X 46.46%) + 2회 기성에 대한 정산금
36,330,000원(≒ 2회 기성대금 78,210,000원 X 46.46%)

4)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한 선급금 정산금 총 52,456,400원 = 1회 기성에 대한 정산금
50,340,000원(≒ 1회 기성대금 108,350,000원 X 46.46%) + 2회 기성에 대한 정산금
2,116,400원(실 지불금 항목이 0이 되도록 보정한 금액)